

-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돌음기업 육성사업 -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돌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「돌음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돌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4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사업명	전북특별자치도 돌음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
사업내용	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
지원대상	전북특별자치도 돌음기업 지정기업('24년, '25년)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0개사 내외- 기업당 연간 1회, 돌음기업 지정 3년간 총 2회 지원- 사업화 마케팅 사업과 중복 수행 가능- 지원과제 수는 선정 시 예산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공고기간	2026. 2. 4.(수) ~ 2026. 2. 27.(금)
접수기간	2026. 2. 11.(수) ~ 2026. 2. 27.(금) 17:00 까지
사업기간	2026. 4. 1.(수) ~ 2026. 9. 30.(수)
지원유형 (자율과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정개선 :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시제품 제작 : 제품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
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기업 과제당 최대 30백만원- 지원금은 공급가액(VAT 제외) 기준- 기업부담금은 도비지원금의 10% 이상

2 지원방식

□ 과제 지원유형

○ 지원한도 : 최대 30백만원

구분	세부 내용
공정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정시스템, 공정단축 개발을 통한 공정개선 ○ 제조 현장의 제조공정에서 생산성 향상, 원가절감, 불량 감소 등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
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○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, 개선 및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화 업그레이드 제작 지원 ○ 개발기술의 상용화(상품화 및 품질향상 등 시장화)를 위한 시제품 제작

- 지원금은 공급가액(VAT 제외) 기준
- 기업부담금은 도비지원금의 10% 이상
- 공정개선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, 타 기업의 제조 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- 본 사업으로 제작된 결과물을 사업종료 후, 타 기업으로 무단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됨

□ 과제 사업비 구성

○ 지원금액 : (도비지원금) 30백만원 + (기업부담금) 도비지원금의 10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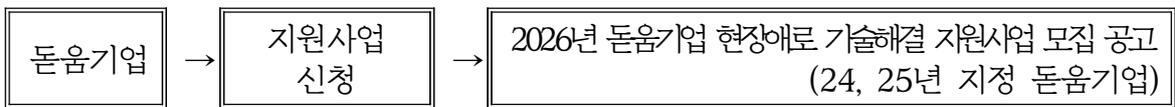
[사업비 구성 예시 ①]		
총 사업비(㉠+㉡)	도비지원금㉠	기업부담금㉢(10%)
33,000,000	30,000,000	3,000,000
[사업비 구성 예시 ②]		
총 사업비(㉠+㉢)	도비지원금㉠	기업부담금㉢(20%)
36,000,000	30,000,000	6,000,000

□ 과제 지원금 지급방식

- 선지급 원칙(이행보증보험 증권 필수, 해당 보증기간: 사업기간 + 가산기간(90일))
 - 신규 사업비 계좌(통장) 발행 또는 기존 계좌(통장) 0원 처리 후 사용
 - 선정 후 과제 협약 시 민간(현금)부담금 입금 후 통장사본 제출

3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

- 공고게시
 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(www.jblc.or.kr)
 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www.jbba.kr)
- 공고기간 : 2026. 2. 4.(수) ~ 2026. 2. 27.(금)
- 접수기간 : 2026. 2. 11.(수) ~ 2026. 2. 27.(금) 17:00 까지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파일 업로드 접수(신청 후 접수확인 전화 요망)
 - ▶ 홈페이지 신청 접수 : www.jblc.or.kr



- 문의사항 : 기업성장팀 최해은 담당관
Tel. 063-711-2071 / E-mail. che13@jbba.kr

4 추진절차

절 차	추진내용	대 상
사업공고 및 접수	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	진흥원
▼		
서류심사	사업계획서, 신청요건 등 제출서류 검토	진흥원
▼		
발표평가	신청내용에 대한 검토 등 선정평가	평가위원
▼		
협약체결	선정과제 계획서 최종보완 및 협약 체결	돈음기업 ↔ 진흥원
▼		
사업수행	지원사업 신청과제 수행	돈음기업, 참여기업
▼		
중간점검	과제 추진 진행현황 등 현장 점검	진흥원
▼		
결과보고	수행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	돈음기업
▼		
최종평가 및 정산	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제출 및 사업비 정산	돈음기업 ↔ 진흥원, 회계법인
▼		
사후관리	지원성과 모니터링, 사후관리	진흥원

5 평가 및 선정

- 평가일정 : 2026. 3. 11.(수) 예정
- 평가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*상세장소 개별 안내
- 평가방식 : 발표평가(발표시간 7분, 질의응답 8분 내외 예정)
 - 과제 총괄책임자 사업계획서 내용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
- 선정기준 :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(60점 미만 탈락)
 - 지원금 잔여 예산 발생 또는 사업중도 포기 시, 차순위 기업 지원
-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의 필요성(15)	사업지원의 필요성	- 사업계획의 당위성 및 사업추진 시급성
목표의 명확성(30)	사업목표의 구체성	-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
	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	- 사업기간 내 추진목표 달성가능성
추진방법의 적정성(35)	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	- 관련기술 및 시장동향의 정보조사 충실성 -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혁신성 등
	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	- 사업비 배정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
파급효과(20)	매출 및 이익 가능성	- 목표 시장진입 가능성 - 진입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
	추진사업의 파급효과	- 매출증대, 고용, 수출,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지원 기대효과 - 기술적·사회적 기여도

6 지원 제한 대상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 책임자 등)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*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기간인 경우
 - *사업별 의무사항: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완전자본잠식, 부도, 휴/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공고일 현재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신청 소속이 아닌 경우
- 신청기업 과제 내용이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- 타 기관 유사 사업 선정 및 수혜 대상기업 등

7 신청서류 목록

연 번	구 비 서 류	비 고
1	돈옴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(공정개선/시제품 제작) 지원사업 계획서 (.hwp 한글파일 제출)	서식 1호
2	대면평가 발표자료(.PPT 또는 .PDF 파일 제출)	자유양식
3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※ 본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참여인력 모두 서명	서식 2호 ~ 서식 5호 (날인 스캔본 통합파일 제출)
4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	
5	중복지원금지 약속서	
6	청렴서약서	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필수제출
8	법인 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)	필수제출
9	4대보험 가입자 명부(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) ※ 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	필수제출
10	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(견적서, 도면, 재료비 산출내역서 등)	필수제출

8 유의사항

- 신청서류 접수는 마감일 17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,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관련 법령, 규정, 공고내용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,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
- 제재부가금
 - 허위 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)의 5배
 -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-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 - 목적 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·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공동운영 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끝.